

정기안전점검 · 정밀안전점검 ·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(제41조제1항 관련)

1. 정기안전점검

- 가. 항만시설(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(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,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부터 1년 이내
- 나.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. 다만,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2. 긴급안전점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청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가. 자연재해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
- 나. 항만시설의 붕괴, 침하,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
- 다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

3. 정밀안전점검

- 가. 정기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항로, 정박지, 소형선 정박지, 선회장 등 수역시설과 관련하여 수중(水中)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항행과 정박(碇泊)에 지장이 있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

- 나. 가목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

- 1) 방파제, 파제제, 안벽(넌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), 돌핀(넌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), 소형선 부두(넌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)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

- 가) 최초 정밀안전점검: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

- 나) 정기 정밀안전점검: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

- 2) 방사제, 방조제, 도류제, 호안, 도로, 교량, 철도, 궤도, 운하, 안벽(넌말뚝 또

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), 소형선 부두(널말
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), 잔교, 부잔
교, 선착장

가) 최초 정밀안전점검: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
이내

나) 정기 정밀안전점검: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증축, 개축 및 리모델링
등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시설, 철거 예정인 항만시설, 그 밖에 사용하지
않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기안
전점검·정밀안전점검·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
있다.